

주차관리지침

- 제1조 (목적)** 이 지침은 서울신학대학교 캠퍼스내(이하"교내"라 한다)의 차량주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정의)** 이 지침에서 "차량교통관리"라 함은 차량의 교내출입과 주차 및 운행 등에 관한 관리를 말한다.
- 제3조 (적용범위)** 이 지침은 교내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4조 (준수사항)** 교내를 운행하거나 주차하는 모든 운전자는 본교의 관련 지침과 방침 (부제 운영 등)에 따라야하며, 관계 종사자의 안내와 지시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5조 (이용료 징수)** 교내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한다(별지 서식).
- 제6조 (업무관장)** 주차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는 총무처에서 관장한다.
- 제7조 (출입증 등)**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량에 출입증, 인식표 또는 주차증 등을 부착시키거나 소지하게 할 수 있다.
- 제8조 (교내주차)** ① 교내 주차는 지정된 주차구역 내에 한하며, 다른 차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- ②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차량을 제외한 어떠한 차량도 주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일반 범칙금의 3배를 부과 한다.
- ③ 교내에 주차하는 모든 차량은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차량 내에 연락처를 표기하여야 한다.
- ④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은 별도의 주차구역과 그 관리기관(부서)을 지정할 수 있다.
- 제9조 (교내운행)** ① 교내에서는 시속 10km 이내로 서행하여야 하며, 경적을 울리거나 기타 연구와 수업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출입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교내의 각 출입구에 차량 통제소 및 통제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- 제10조 (벌칙)** ① 주차 위반 시에는 1차 경고(경고장)하고, 30분경과 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(1만원)를 부과한다.
- ② 제1항에 의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차량에 대하여는 한 달간 교내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③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여 방치된 차량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견인 조치할 수 있다.
- ④ 기타 이 지침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교내출입 또는 통행을 제한 할 수 있다.
- 제11조 (귀책사유)** ①주차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본 관리지침 및 이용수칙을 준수 하여야한다
- ② 이용수칙 불이행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간주 한다.
- ③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본교 내에서 발생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이

를 배상하여야 한다.

- ④ 주차된 차량내에 현금 및 귀중품을 둘 수 없으며 이를 분실 시에는 본교에서 변상하지 아니하며 차량 소유자가 책임져야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6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지침의 개정) 이 지침은 기획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로 개정한다.